

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

- 제정 2010. 1. 15. 국립국어원 예규 제 70호
- 개정 2012. 1. 31. 국립국어원 예규 제 75호
- 개정 2013. 12. 26. 국립국어원 예규 제 94호
- 일부개정 2014. 3. 10. 국립국어원 예규 제108호
- 일부개정 2017. 12. 28. 국립국어원 예규 제135호
- 일부개정 2019. 1. 14. 국립국어원 예규 제141호
- 일부개정 2020. 9. 23. 국립국어원 예규 제151호
- 일부개정 2021. 1. 26. 국립국어원 예규 제152호
- 전부개정 2023. 3. 6. 국립국어원 예규 제16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‘국립국어원 국어사전’이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‘표준국어대사전’과 ‘우리말샘’을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의 수정·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‘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’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촉직 위원은 사전 또는 언어학 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하며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은 사전팀장 또는 사전 담당 학예연구관 1명과 어문규범 담당자 1명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전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가 맡도록 하며,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,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,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.

제4조(심의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단순 오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히 수정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자체 검토, 전문가 제안, 사전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취합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주요 정보의 수정·갱신에 관한 사항
2. 국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서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
3.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

제5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②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의 권한으로 횟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및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촉직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국립국어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
2. 사망, 질병, 장기 여행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제9조(결과 반영) 위원회에서 수정·갱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,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거나 심의 결과의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 <2010. 1. 15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1. 31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12. 26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3. 10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12. 28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1. 14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9. 23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1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.

부 칙 <2023. 3. 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.

